

# 대학원 몽골학과 운영 내규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몽골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몽골학과 석·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 제2장 입학관리

**제3조 (우수학생의 유치)** 몽골학과 소속 교수들은 몽골학과 석·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제4조 (입학정원)** 입학정원은 매 학기 입학 지원자 중 수학능력이 인정된 자에 따라 정한다.

**제5조 (추가정원)** 대학원 입학 추가 전형이 실시되는 경우에 한하며, 입학 지원자 중 수학능력이 인정된 자로 추가 합격을 실시한다.

**제6조 (입학지원자격)** 입학자격은 대학원 규정에 따른다.

## 제3장 교과목 수강 및 취득 학점

**제7조 (이수과목)** 학부에서 몽골학과 관련 전공을 하지 않은 자는 몽골학과 전공 관련 교과목을 보충 수강하여야 한다.

1. 이수 대상자는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후 박사과정 입학생, 석사 후 박사과정 전공을 바꾼 입학생, 학사 후 석사과정 전공을 바꾼 입학생, 편입학 이전의 전공을 바꾼 편입학생이다.

2. 보충과목 이수 학점은 석사는 최대 12학점, 박사는 최대24학점이다.
3. 보충 교과목 인정은 학과 교수회의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한다.
4. 보충과목 대체인정은 보충과목 이수대상자가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이 현 전공학과의 하위학위 교육과정 교과목과 일치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학과주임교수에게 “하위과정 이수교과목 비교표”를 작성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득하면 보충과목 학점 취득으로 인정한다.

### 제8조 (취득학점)

1. 학점은 매 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다.
2. 보충 교과목은 한 학기 최대 6학점을 초과 수강할 수 없다.
3. 석사과정 이수 학점은 33학점 이상이다. [전공24학점+연구지도(\*\*세미나, II, III; 2~4학기 신청)9학점]
4. 박사과정 이수 학점은 45학점 이상이다. [전공36학점+연구지도(\*\*세미나, II, III; 2~4학기 신청)9학점]

## 제4장 논문지도

### 제9조 (지도교수의 선정)

1. 자신의 세부 전공에 따라 논문지도교수를 신청하고 논문지도교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논문 지도 교수 변경 시는 적합한 사유에 따라 원 지도교수와 변경 지도교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최종 변경 사항은 주임교수가 승인한다.

## 제5장 자격시험

**제10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논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논문제출 전에 소속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종합학력시험에 면제하거나 합격하여야 한다( 면제기준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 제11조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1. 응시 자격은 석사과정 전공 18학점, 박사과정 전공 27학점, 통합과정 전공 45학점 이상 취득과 외국어 자격시험에 통과한 자이다.

2. 응시 과목은 석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이상, 박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이상이다. 단, 지도교수의 과목을 1개 이상 선택 할 수 없다. 특별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취득하여 시행한다.
3. 시험 방법은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을 시행하며, 필기시험은 해당 교과목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가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두시험은 과목별로 학과 전임 교원 2인이 참여하여 공동 출제 및 공동 평가한다.
4. 해당 교과목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가 부재 시에는 주임교수가 출제 교수를 내정한다.
5. 종합시험 중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과목에 한해 불합격 처리하고 다음 학기에 재응시한다. '부정행위'의 범위는 타인의 답안지 보기, 준비된 쪽지 감추어보기, 타인과 쪽지 주고받기, 교과서/자료 보기 등에 해당한다.
6. 전공 교과목 시험 시간은 각 교과목당 50분이다.
7. 각 교과목당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 제13조 (외국어 자격시험 면제)

#### 1. 공인어학시험

- ① 내국인 학생 : 영어 성적으로만 면제한다.
- ② 외국인 학생 : 한국어 성적 또는 영어 성적(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으로만 면제한다. 한국어 성적은 TOPIK 5급 이상이다. 단, 입학 시 TOPIK 점수 기준이 없는 외국인 학생은 TOPIK 4급이상이다.

#### 2. 해외 수학(연수)국가

- ① 내국인 학생 : 영어권 국가에서 수학(연수)시에만 면제한다.
- ② 외국인 학생 : 한국 또는 영어권 국가(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에서 수학(연수)시에만 면제 가능하다.

## 제6장 학위과정

**제14조 (학위취득 요건)** 석사학위 과정의 학위 취득요건은 학위논문 제출을 충족시켜야 한다. 석·박사 통합과정, 박사학위 과정의 학위 취득요건은 전공 관련 학술기관이나 학회에서 2회 이상의 발표를 진행하고, 학위논문 제출을 충족시켜야 한다.

**제15조 (석사학위 과정의 변경)**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사유서

첨부 후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할 경우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

## 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

### 제16조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

1. 연구계획서를 공개발표가 이루어지기 7일전까지 학과 사무실에 제출한다.
2. 학위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 내에서 정해진 기간과 장소에서 연구계획서를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

### 제17조 (학위논문의 지도 및 작성)

1. 연구 계획서 발표 시 심사교수로부터 받은 피드백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2. 학위 논문 기술은 교내 학위논문 기술 양식에 따른다.

### 제18조 (논문심사위원)

1. 논문 심사는 대학원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위원의 전원 참석 하에 진행한다.
2. 석사 학위 논문의 경우 전임 교원 3인, 박사 학위 논문의 경우 전임 교원 3인과 외부 심사위원 2인으로 총 5인의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 제19조 (학위논문의 심사)

1. 논문 심사 진행 절차
  - ① 석사과정 : 자격시험→계획서발표→논문작성→예비심사→본심
  - ② 박사과정 : 자격시험→계획서발표→논문작성→예비심사→본심
2. 예비 심사는 교내 전임교원들이 참석하여 협의, 판정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중간심사의 기능을 강화하여 본심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제20조 (석사 학위논문 대체 자격 인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통합과정 모두 학위논문 대체 자격이 별도로 없다.

## 제8장 대학원 위원회

제21조 (의사결정 방식) 학과 내 대학원 위원회는 따로 두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학과 교수회의를 운영한다.

### 제22조(주임교수)

1. 전임 교원 중 1인이 대학원 주임교수로 위촉받아 대학원 학사 및 행정 업무에 관하여 책임 및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학과 교수 회의를 소집하여 의결사항을 논의한다.
2. 주임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